



문화예술진흥법

[시행 2023. 12. 21.] [법률 제19480호, 2023. 6. 20., 일부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 (문화정책과-문화이용권) 044-203-2516

문화체육관광부 (문화기반과) 044-203-2649

문화체육관광부 (시각예술디자인과-건축물 미술작품) 044-203-2758

문화체육관광부 (예술정책과-문예기금, 한국문화예술위원회) 044-203-2714

문화체육관광부 (예술정책과-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육성) 044-203-2712

문화체육관광부 (예술정책과-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) 044-203-2713

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

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9. 27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·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 6. 20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23. 6. 20.>

④ 제2항에 따른 공연·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23. 6. 20.>
[본조신설 2008. 1. 17.]

부칙 <제19592호, 2023. 8. 8.> 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)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